

	방송국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7	
			제정일	2002. 07. 10.	
			개정일	2014. 09. 01.	
			페이지	1/4	관리 부서 학생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위치) 본 방송국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하 ‘본 대학’) 총장 직속 기관인 신문방송국의 한 기관으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칭하며,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방송국은 본 대학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넓은 교양 지식과 건전한 학풍조성 및 정서함양을 위해 방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 제

제3조(편제) 방송국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의 집행을 위해 주간, 국장, 부국장, 부장, 정 국원, 수습국원으로 구성되며, 제작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보도부를 둔다.

제 3 장 임 원

제4조(임원구성)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주간 1명
2. 학생임원은 아래의 각 목과 같다.
 - 가. 국장 : 1명
 - 나. 부국장 : 1명
 - 다. 제작부장 : 1명
 - 라. 기술부장 : 1명
 - 마. 아나운서부장 : 1명
 - 바. 보도부장 : 1명

제5조(임원선출) ① 주간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② 국장과 부국장은 방송국 내에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주간의 승인을 받는다.

③ 각 부의 부장은 각 전 부장이 위촉하고, 주간의 승인을 받는다.

	방송국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7	
			제정일	2002. 07. 10.	
			개정일	2014. 09. 01.	
			페이지	2/4	관리 부서 학생처

- 제6조(임원임기 및 보선) ①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학생임원의 임기는 3학년 1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 ③ 임기 만료전 학생임원이 궐위된 경우, 제4조 2호에 입각하여 임기 중 학생임원이 겸임한다.
- ④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임무) ① 주간은 대내·외적으로 방송국을 대표하며, 방송국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국장은 방송국의 전 국원을 대표하며, 주간의 승인을 받아 방송국 업무에 따른 제반사항을 주관한다.
- ③ 부국장은 방송국의 재정을 관리하며, 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작부장은 방송의 기획 및 구성 연출에 관련된 사항을 주관한다.
- ⑤ 기술부장은 방송음악 선곡과 방송기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 ⑥ 아나운서부장은 방송 시 직접 정보제공 업무를 주관한다.
- ⑦ 보도부장은 본 대학 내·외적 소식과 정보 수집을 주관한다.

제 4 장 국 원

- 제8조(수습국원 선발기준) ① 본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써 학년 초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선발한다.
- ② 학기 중 수습국원의 결원 및 증원 등으로 재 선발을 요할 때는 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
- ③ 주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간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수습국원을 선발할 수 있다.

- 제9조(정 국원 선발기준) ① 수습을 마친 수습국원 중 학생임원의 심의를 거쳐 주간의 승인을 얻은 후 선발한다.
- ② 주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간의 재량에 의하여 정 국원을 선발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 제10조(회의 및 시기) ① 정기회의는 개강 및 종강일로부터 약 15일 내에 소집하며 주간의 참여하에 예산, 결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토의하고 국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국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7	
			제정일	2002. 07. 10.	
			개정일	2014. 09. 01.	
			페이지	3/4	관리 부서 학생처

② 임시회의는 국장, 부국장 및 국원 1/3이상의 요구 시 주간의 재가를 받아 소집된다. 의결사항은 정기회의에 준한다.

③ 기타 회의는 방송국 자체 규칙에 의하여 방송국장의 주관 하에 실시하며, 회의결과는 주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6 장 포 상 및 징 계

제11조(포상) 방송국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인정될 때, 주간이 학교에 추천하여 총장이 포상한다.

제12조(징계) ① 방송국 자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국원은 근신에 처한다.

② 2회의 근신을 받은 국원은 경고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원은 제명한다.

1.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국원
2. 방송국 내규를 지키지 않은 국원
3.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국원
4. 방송국 비품을 고의 파손하거나, 주간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국원
5. 대내·외적으로 방송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학생 신분 이탈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국원

④ 이와 같은 징계사유 발생 시 제 1, 2항의 경우 방송국장의 직권으로, 제 3항은 주간의 직권으로 징계한다.

제 7 장 교 육

제13조(교육) 수습국원의 교육은 각 부장들의 협의 하에 교육 내용을 작성한 후, 주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8 장 재 정

제14조(재정) ① 대학은 방송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의 재정에는 학생의 자율적 경비가 포함된다.

	방송국 운영 규정	문서번호	4-1-7		
		제정일	2002. 07. 10.		
		개정일	2014. 09. 01.		
		페이지	4/4	관리 부서	학생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